

1. 개정이유

수산물 검정기관의 지정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4년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내수용 수산물 생산해역(일반해역) 위생관리 기준을 설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6781호, 2019. 12. 10. 공포, 2020. 6. 11. 시행), (법률 제17024호, 2020. 2. 18. 공포, 2020. 8. 19. 시행)됨에 따라, 관련 법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검정기관 갱신 수수료 징수를 위한 관련 서식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지정해역 위생관리 기준에 대한 법조문 변경에 따른 시행규칙의 인용조항 수정(안 제86조제1항, 안 제88조제1항 및 제3항)
- 나. 검정기관 지정수수료 항목에 ‘갱신’ 추가(안 별표34)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의견조회 및 규제심사(3월), 입법예고(4월), 법제처 제출(5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1항제1호 중 “법 제69조”를 “법 제69조제1항”으로 한다.

제88조제1항제5호가목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본문 중 “법 제69조”를 각각 “법 제69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34 제5호 “지정신청”을 “지정신청(신규·갱신)”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6조(지정해역의 지정 등) ① 해 양수산부장관이 법 제71조제1항 에 따라 지정해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6조(지정해역의 지정 등) ① --- ----- ----- -----.		
1. 지정해역 지정을 위한 위생조 사·점검계획을 수립한 후 해역 에 대하여 조사·점검을 한 결 과 <u>법 제69조</u> 에 따라 해양수산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해역의 위생관리기준(이하 “지정해역위 생관리기준”이라 한다)에 적합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 ----- ----- <u>법 제69조제1항</u> ----- -----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8조(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 등 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74조제1 항에 따라 수산물의 생산·가공시 설(이하 “생산·가공시설”이라 한 다)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45 호서식의 생산·가공시설 등록신 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양식시 설의 경우에는 제7호의 서류만 제 출한다.		제88조(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 등 의 등록신청 등) ① ----- ----- -----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5.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생산·가공용수에 대한 수질검사성적서(생산·가공시설 중 선박 또는 보관시설은 제외한다) 가. 유럽연합에 등록하게 되는 생산·가공시설: <u>법 제69조</u>에 따른 수산물 생산·가공시설의 위생관리기준(이하 “시설위생관리기준”이라 한다)의 수질검사항목이 포함된 수질검사성적서 나. (생략) 6.·7.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한 후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생산·가공시설에 대해서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에 대해서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 등록증을 발급한다. 1. 생산·가공시설: <u>법 제69조</u>에	5. ----- ----- ----- ----- 가. ----- ----- <u>법 제69조</u> <u>제1항</u>----- ----- ----- ----- ----- 나. (현행과 같음) 6.·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 ----- -----. 1. ----- <u>법 제69조제1</u>

현행	개정안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시설위생관리기준에 적 합할 것. 다만, 패류양식시설은 제8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지정해역에 있어야 한다.	<u>항</u> ----- ----- -----. -----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략)	④ ~ ⑥ (현행과 같음)